『러시아, 제품 라벨링 및 수량 특성 정보 제공 요건 강화를 위한 소비자 보호 연방법 개정안』

2026. 07. 27.

TBT 통보여부	미통보	HS Code	전 제품
통보국	러시아	전년도 수출액 (천불)	4,043,622 (2025년 기준)
작성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문의처	tbt@kotica.or.kr

국가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TBT 종합지원센터 R&I Cente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을 개정하여 상품의 중량·용량 표시를 강화하고, 포장 크기를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자 함

○ **(적용범위)**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하는 목록에 포함된 상품, 가격표에 중량·용량 측정단위를 표시하는 상품 및 중량·용량 변경 시 포장 크기와 용적을 유지하는 식품에 적용됨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하는 상품의 포장 전면에 중량·용량 정보를 표시하고 최소 글자 크기를 규정, 가격표에 중량·용량 측정 단위를 표시하는 경우 표시 면적과 형식을 규정하였으며 식품의 중량·용량을 변경하면서 기존 포장 크기와 용적을 유지하는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함

○ **(인증정보)** 정부가 지정할 비식품 상품은 해당 품목별 기존 EAEU·러시아 기술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식품은 TR CU 021/2011에 따라 제품 유형별로 적합성선언, 국가등록 또는 수의위생검사가 적용됨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 **(미국)** 포장식품의 순내용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과대포장을 규제함
- **(EU)** 포장식품의 순수량 표시와 소비자 오인 방지 의무 적용함
- **(일본)** 가공식품의 내용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를 규제함
- **(중국)** 포장식품에 순내용량 등 의무정보 표시를 요구함

□ 기술규제 영향분석

ㅇ **(규제 영향 분석 결과)** 러시아 수출기업은 포장 전면의 중량·용량 표시 확대, 가격표 표시 및 식품 중량·용량 변경 시 동일한 포장 크기·용적 유지 금지에 따라 라벨·포장 변경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ㅇ **(권고사항)** 적용 대상 품목과 시행 시점을 확인하고, 중량·용량 표시 크기·배치 기준 및 내용량 변경 제품의 포장 규격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ㅇ **(표시요건 준수 부담)** 기업은 포장 전면과 가격표의 중량·용량 표시 크기·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의 중량·용량을 변경하면서 포장 크기와 용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소비자 기만으로 판단될 수 있음

ㅇ **(비용·절차 부담)** 적용 대상 제품은 라벨·포장 디자인 변경, 포장재 교체 및 유통단계 가격표 수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응 방안

ㅇ **기업 규모별 전략**

- **(중소기업)** 적용 대상 여부와 표시 기준을 확인하되, 정부의 상품 목록 확정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 가능성을 우선 점검함
- **(중견기업)** 제품별 내용량·포장 규격·가격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식품 중량·용량 변경 시 포장 크기·용적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구축함
- **(대기업)** 법률안 심의와 후속 정부 목록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지 법인·수입자·유통업체와 라벨·가격표·재고 전환 대응체계를 마련함

목 차

요약문 1

Ⅰ. 규제 개요 2

Ⅱ. 규제 세부 내용 4

Ⅲ. 관련 인증 정보 8

Ⅳ.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2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2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14

Ⅴ.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6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16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19

Ⅵ. 대응 방안 20

참고 1 참고자료 21

참고 2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22

요 약 문

규제명	영문	Protection of Consumers, Federal Law No. 2300-I, 1992 - Proposed Amendment - (on additional requirements for product labeling (price tags and packaging) and requirements for informing buyers about the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products) Draft Federal Law, July 2026		
	국문	제품 라벨링 및 수량 특성 정보 제공 요건 강화를 위한 소비자 보호 연방법 개정안 (2026년 7월)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러시아
채택(예정)일		-	시행현황	개정 초안
시행(예정)일		공식 공포일 (구체적 날짜 미정)	통보일(고시일)	-
HS Code		전 제품	의견수렴 마감일	의견수렴 미진행
총 수출액		683,525,430 천불 (2025년 기준)	對발행국 수출액	4,043,622 천불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 러시아연방 국가두마(State Duma of the Russian Federation) ▪ 러시아연방 정부(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적용 대상 상품 목록 지정		
	규제 목적	▪ 상품의 중량·용량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슈링크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자 기만을 방지함		
	주요 내용	▪ 정부가 지정한 상품의 포장 전면에 중량·용량 정보를 표시하고, 표시 글자 크기를 상품명 글자 크기의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함 ▪ 가격표의 중량·용량 정보 표시 면적을 가격 표시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함 ▪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하면서 포장 크기와 용적을 유지하는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하고 제조자에게 책임을 부과함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 상품의 중량·용량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내용량 감소 시 기존 포장 크기를 유지하는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규정하는 개정 초안임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 적용 목록 확정 후 포장·라벨 및 유통단계 가격표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식품 중량·용량 변경 제품은 동일 포장 크기·용적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		
	대응 방안	▪ 법률안 채택 여부와 후속 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확정 요건에 따라 제품별 라벨·포장·가격표·재고 전환 계획을 수립함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 러시아는 「소비자권리보호법」에 따라 상품정보 제공 및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제도를 운영해 왔음

○ 최근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포장 내 중량·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확산되어 소비자의 가격 비교와 합리적 구매를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상품의 중량·용량 정보를 포장 전면과 가격표에 명확히 표시하고, 내용량 감소 시 기존 포장 크기를 유지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됨

○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들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함

□ 규제 요지

○ 러시아연방 정부가 지정하는 상품은 포장 전면에 중량·용량 정보를 표시하고, 표시 글자 크기를 상품명 글자 크기의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함

○ 가격표의 중량·용량 정보는 상품 가격 표시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가격 표시와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함

○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하면서 포장의 외형과 용적을 유지하는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하고, 제조자에게 현행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

□ 적용대상

○ 다음 상품 및 식품에 적용됨

-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하는 목록에 포함된 상품
- 가격표에 상품의 중량·용량 측정단위를 표시하는 상품
- 중량·용량 변경 시 포장의 크기와 용적을 유지하는 식품

□ 시행일

○ 본 법률안은 공식 공포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개정 초안 단계로 구체적인 시행일은 미정임

2 규제 세부 내용

□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식품의 중량·용량 정보	제10조 제2항에서 식품의 중량·용량을 필수 제공정보로 규정함	기존 정보제공 의무에 더하여 정부 지정 상품의 중량·용량을 포장 또는 라벨 전면에 표시하도록 함
적용 대상 상품	정부가 일부 상품의 소비자에게 제공할 정보 목록과 제공방법을 정할 수 있으나, 포장 전면 중량·용량 표시 대상 목록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러시아연방 정부가 포장 전면 중량·용량 표시 대상 상품 목록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포장 전면 표시 위치	중량·용량 정보를 포장 전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위치 기준 없음	중량·용량 정보를 포장 또는 라벨 전면에 상품명과 동등한 위치 및 기술적 표시 형식으로 표시함
포장 표시 글자 크기	중량·용량 표시와 상품명 간 최소 글자 크기 비율 없음	중량·용량 표시 글자 크기를 상품명 글자 크기의 5분의 1 이상으로 함
가격표 표시	현행 제10조는 가격 정보를 필수정보로 규정하지만, 가격표의 중량·용량 정보 표시 면적과 형식은 규정하지 않음	가격표에 상품의 중량·용량 측정단위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표시 면적을 상품 가격 표시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 함
가격표 표시 형식	중량·용량 표시의 색상·글꼴·크기 등에 관한 별도 기준 없음	가격표에 상품의 중량·용량 측정단위를 표시하는 경우, 중량·용량 정보를 가격 표시와 동일한 배치·기술적 형식으로 표시하고, 색상·글꼴 종류·글자 크기를 동일하게 적용함
내용량 변경과 포장 유지	식품의 내용량을 줄이면서 기존 포장 크기와 용적을 유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소비자 기만으로 규정하지 않음	식품의 중량·용량을 변경하면서 포장의 외형과 용적을 유지하는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함
위반 책임	제10조에는 식품의 내용량 변경과 포장 유지 행위에 대한 제조자 책임을 본 개정안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명시한 규정이 없음	해당 행위가 확인되면 제조자가 현행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 세부내용

ㅇ 법률안 구성

- 본 법률안은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 조문인 제1조와 시행시점을 정한 제2조로 구성됨

- 부속자료로 법률안 설명서, 재정·경제적 타당성 자료 및 관련 연방법률 정비 목록이 첨부됨

ㅇ 제1조(「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

- 1992년 2월 7일자 러시아연방 법률 제2300-I호 「소비자권리보호법」 제10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추가함

ㅇ 제10조 제4항(포장 전면 표시)

- 적용 대상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하는 상품 목록에 포함된 제품임

- 해당 상품의 중량 또는 용량 정보를 포장이나 라벨의 전면에 표시해야 함

- 중량·용량 정보는 상품명과 배치 및 기술적 표시 형식에서 동등하게 표시해야 함

- 중량·용량에 사용하는 글자 크기는 상품명 글자 크기의 5분의 1보다 작아서는 안 됨

ㅇ 제10조 제5항(가격표 표시)

- 제5항에는 제4항과 달리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하는 상품 목록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문구가 없음

- 가격표에 상품의 중량·용량 측정단위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함

- 해당 정보의 표시 면적은 상품 가격이 표시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중량·용량 정보는 가격 표시와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해야 함

- 동일한 형식에는 배치, 기술적 표시 방식, 시각적 형태, 색상, 글꼴 종류 및 글자 크기가 포함됨

ㅇ 제10조 제6항(포장 크기 유지형 내용량 변경)

- 동 규정은 제4항의 정부 지정 상품 목록과 별도로 식품에 적용됨
- 포장을 제외한 식품 자체의 중량 또는 용량을 변경하면서 포장의 외형 크기와 용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함
- 해당 행위가 확인된 경우 러시아연방 법령에 따라 제조자는 책임을 부담함

ㅇ 제2조(시행)

- 본 연방법은 공식 공포 시점부터 시행함

ㅇ 설명서(입법 목적)

- 상품의 가격표와 포장에 대한 추가 표시요건을 마련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제품의 중량·용량 등 수량적 특성에 관한 구매자 정보제공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ㅇ 설명서(도입 배경)

- 기존 가격을 유지하면서 포장 내 상품의 중량 또는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함
- 이러한 관행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서로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한다고 판단함
- 상품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작하고 제품가격을 은폐된 방식으로 인상하는 행위로 설명함

ㅇ 설명서(법률안 주요 내용)

- 상품 포장 전면에 중량·용량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함
- 중량·용량 정보를 상품명과 동등한 배치 및 기술적 표시 형식으로 표시함
- 중량·용량 표시 글자 크기를 상품명 글자 크기의 5분의 1 이상으로 설정함
- 상품 수량을 줄이면서 포장 크기를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함

- 가격표의 중량·용량 정보 표시 면적을 가격 표시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 설정함
- 가격표의 중량·용량 정보를 가격 표시와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함

ㅇ 설명서(기대효과 및 국제협정 부합성)

- 소비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함
-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방지함
- 식품 제조업체 간 보다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함
- 법률안은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관한 조약」 및 러시아연방의 기타 국제조약에 부합한다고 설명함

ㅇ 재정·경제적 타당성 자료

- 법률안의 채택 및 시행에는 연방예산으로 충당되는 추가 지출이 필요하지 않음
- 국가의 재정적 의무에도 별도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음

ㅇ 관련 연방법률 정비 목록

- 법률안 채택에 따라 다른 연방법률을 폐지할 필요가 없음
- 다른 연방법률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없음
- 별도의 연방법률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음

3 관련 인증 정보

※ 본 규정의 제도적 특성상 별도의 인증 체계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의 규제 준수를 위한 필수 이행 절차를 중심으로 서술함

□ 인증절차

○ 본 개정안은 별도의 적합성평가제도를 신설하지 않으며, 개정안이 직접 규율하는 식품에는 기존 TR CU 021/2011 「식품 안전」에 따라 제품 유형별로 적합성선언, 국가등록 또는 수의위생검사가 적용됨

- 식초, 특수용도식품 및 비가공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유통 식품은 적합성선언 대상이며, 특수용도식품 및 신종 식품은 국가등록, 비가공 동물성 식품은 수의위생검사를 적용함
- 적합성선언은 신청자가 1d·2d·3d 방식 중 해당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되, 개별 식품 기술규정에서 다른 방식을 정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함
- 1d는 연속생산 제품에 대해 기술문서 검토, 생산관리 및 제품시험을 수행하고, 2d는 제품 로트에 대해 기술문서 검토와 제품시험을 수행함
- 3d는 연속생산 제품에 대해 기술문서 검토와 생산관리를 실시하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수행함
- 제품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적합성선언을 등록하고 EAC(Eurasian Conformity, 유라시아 적합성) 마크를 표시함
- 특수용도식품은 신청서, 제품 용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및 기타 적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국가등록을 완료한 후 생산·수입·유통할 수 있음
- 신종 식품은 신청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제품 안전성 입증자료 및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최초 생산 또는 최초 수입 전에 국가등록을 완료해야 함

* 적합성평가 신청자는 EAEU 회원국에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자, 판매자·수입자 또는 외국 제조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 및 부적합 책임을 부담하는 대리인이어야 함

□ 사후관리

○ 적합성선언 신청자는 선언 유효기간 동안 제품이 TR CU 021/2011 및 해당 제품별 기술규정에 지속적으로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함

- 1d 및 3d 방식의 연속생산 제품은 제조공정의 안정성과 제품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관리를 지속해야 함
- 등록된 적합성선언과 시험결과·기술문서는 시장감독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함
- 러시아에서는 Rospotrebnadzor(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가 식품 안전·표시 및 소비자보호 요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함
- 적합성선언 및 국가등록증의 등록상태, 효력 정지·재개·종료 여부는 관련 통합등록부를 통해 관리됨

□ 표시사항

○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식품은 TR CU 022/2011 「식품 표시」에 따른 표시사항과 EAC 마크를 적용해야 함

- 포장식품에는 제품명, 원재료·성분, 식품의 수량, 제조일, 유통기한, 보관조건, 제조자·수입자 정보, 영양정보 및 EAC 마크 등을 표시함
- 식품의 수량은 제품 특성에 따라 질량, 부피 또는 개수 단위로 표시함
- 표시정보는 러시아어로 작성하고, 회원국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의 공용어를 함께 사용함
- 표시내용은 명확하고 읽기 쉬우며 사실에 부합해야 하고, 제품의 특성이나 수량 등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켜서는 안 됨
- EAC 마크는 제품 단위, 포장 또는 동반 문서에 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표시 위치는 적용되는 제품별 기술규정에 따름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적합성선언 등록 시 신청서, 신청자 등록정보, 제품 식별정보, 적용 기술규정, 외국 제조자와의 계약서, 시험결과, 기타 적합성 입증자료를 제출함

- 특수용도식품의 국가등록 시 신청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기타 적용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 및 제품 용도자료를 제출함
- 신종 식품의 국가등록 시 신청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제품 안전성 입증자료 및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함
- 외국어로 작성된 국가등록 제출서류는 러시아에서 신청하는 경우 러시아어 번역본을 첨부하고, 러시아 법령에 따라 번역을 인증받아야 함

ㅇ (유효기간) 일반 식품의 적합성선언 유효기간은 개별 식품 기술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신청자가 설정함

- TR CU 021/2011에 따른 특수용도식품 및 신종 식품의 국가등록은 별도의 유효기간 제한 없이 인정되며, 부적합 등의 사유가 확인되면 효력이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

ㅇ (국가등록 비용) 러시아의 식품 등 제품 국가등록 수수료는 5,000루블임

ㅇ (서류 보존기간) TR CU 021/2011에서 별도 보존기간을 정하지 않은 적합성선언과 관련 증빙자료는 선언 등록일부터 10년간 보관함

ㅇ (변경사항 발생 시) 등록된 적합성선언의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없으며, 선언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적합성선언을 작성·등록해야 함

- 신청자·제조자의 법적 형태나 주소 변경, 오탈자 정정 등 정해진 행정사항은 일부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 새로운 선언을 등록할 수 있음
- 국가등록증은 오탈자, 신청자·제조자의 법적 형태 또는 주소 등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추가시험 없이 교체할 수 있음

ㅇ (위반 시 제재) 제품이 적용 기술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제출자료의 허위・부정확성이 확인되면 적합성선언은 효력이 정지・종료되거나 무효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국가등록증은 효력이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

- 국가등록증의 효력이 정지된 제품은 신청자 부담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하며, 부적합이 재확인되면 국가등록증의 효력이 종료됨

□ 적합성평가 기관

ㅇ 러시아의 식품 적합성평가는 적합성평가 유형에 따라 다음 기관이 관여함

- Rosaccreditation(러시아 연방인정청): 적합성선언 전자등록 서비스 제공 및 인증서・적합성선언 통합등록부의 러시아 국가부문 관리
- Rospotrebnadzor: 특수용도식품・신종 식품의 국가등록 및 식품 안전・표시 관련 시장감독
- EAEU 통합등록부 등재 공인시험기관: 3d 적합성선언 및 국가등록에 필요한 제품시험 수행
- 러시아 관할 수의당국: 비가공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의위생검사 수행

4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미국

○ **(현행 규정)** 포장식품은 주표시면에 순내용량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 기능상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빈 공간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포장으로 규제될 수 있음

○ **(도입동향)** 2025년 H.R. 5226 「기만적 제품 축소 금지법안(Deceptive Downsizing Prohibition Act of 2025)」이 발의되어 종전 제품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면서 제품 수량을 줄이는 행위를 금지하되 주표시면에 종전·변경 수량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미국은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에 별도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보다는 FDA의 순내용량 표시와 FTC의 불공정·기만행위 규제를 통해 관리함

2 EU

○ **(현행 규정)** 규정(EU) No 1169/2011에 따라 포장식품의 순수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식품의 수량·특성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정보 제공을 금지함

○ **(도입동향)** 규정(EU) 2025/40은 묶음·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을 원칙적으로 최대 50%로 제한하는 요건을 2030년부터 단계 적용하고, 2028년 2월 12일까지 다른 포장에 대한 최소 중량·최소부피 설계방법론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EU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위한 별도 제품인증을 운영하기보다 순수량 표시, 소비자 오인 방지 및 과대 포장 제한을 연계하여 관리함

3 일본

○ **(현행 규정)** 일본은 「식품표시법」과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의 내용량 등을 표시하고, 「경품표시법」에 따라 실제보다 유리하게 오인시키는 표시를 규제함

○ **(도입동향)**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표시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표시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2026년에도 식품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식품표시 적정화를 위한 일제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일본은 슈링크플레이션 전용 인증이나 표시마크를 운영하지 않으며, 정확한 내용량 표시와 소비자 오인 여부를 기존 식품표시법 및 경품표시법을 통해 관리함

4 중국

○ **(현행 규정)** 중국은 「식품안전법」과 현행 GB 7718-2011에 따라 사전포장식품의 식품명·규격·순함량 등 의무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함

○ **(도입동향)** GB 7718-2025가 2025년 3월 16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디지털 라벨과 식품표시의 가독성·정확성 관련 요건 등을 구체화함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중국은 슈링크플레이션 전용 인증제도보다는 강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통해 순내용량과 규격 등 수량정보를 관리함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러시아[1]	미국[2]	EU[3]	일본[4]	중국[5]
상위 법·프레임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안 제1281187-8호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21 CFR 101.7·100.100	규정(EU) No 1169/2011, 규정(EU) 2025/40	「식품표시법」 및 「식품표시기준」	「식품안전법」 및 GB 7718-2025
주요 규제기관	러시아연방 정부 구체적 집행기관은 초안에 미명시	식품의약국(FDA)	EU 집행위원회, 회원국 관할기관	소비자청(CAA) 및 지방 관할기관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 시장감독기관
규제 대상	러시아연방 정부가 지정하는 상품 및 중량·용량을 변경하면서 포장 크기와 용적을 유지하는 식품	포장식품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포장식품	소비자 판매용 가공식품 등	사전포장 식품
제도 성격	소비자보호 표시규제 개정 초안	강제 식품 표시규제	강제 식품정보 표시규제	강제 식품 표시규제	강제 식품안전 국가표준
중량·용량 표시	포장·라벨 전면에 표시하고 글자 크기는 상품명 글자의 5분의 1 이상	주표시면에 순내용량 표시	포장식품의 순수량 표시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내용량 표시	규격·순함량 등 의무정보 표시
가격표 표시	중량·용량 정보 면적을 가격 표시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	동일한 정량기준 없음	동일한 정량기준 없음	동일한 정량기준 없음	동일한 정량기준 없음
내용량 감소 규제	내용량 변경 시 포장 크기·용적을 유지하면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	비기능성 빈 공간 등 소비자 오인 포장 규제	수량 관련 오인표시 및 과도한 포장 규제	정확한 내용량 표시 및 오인표시 규제	순함량 표시와 소비자 오인 방지 중심
책임·사후관리	소비자 기만 확인 시 제조자가 현행 법령에 따른 책임 부담	FDA가 시장감독 및 제재	식품사업자 책임 및 회원국 감독	식품사업자 책임 및 소비자청 감독	생산·경영자 책임 및 시장감독

최근 동향	공식 공포일부터 시행 예정	순내용량오인 포장 규제 운영	식품정보 표시와 포장 최소화 규제 병행	기존 식품표시제도 중심 관리	GB 7718-2025에 따라 표시 요건 개편
수출기업 대응	적용 대상과 포장·가격표 표시기준 확인	순내용량과 포장 빈 공간 점검	순수량 표시와 포장 최소화 기준 확인	일본어 내용량 및 오인 표시 점검	중국어 순함량 표시 및 GB 7718-2025 확인

1) 러시아, 국가두마(State Duma), 법률안 제1281187-8호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 https://sozd.duma.gov.ru/bill/1281187-8
2) 미국,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eCFR), 21 CFR §101.7 「Declaration of net quantity of contents」 -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01/subpart-A/section-101.7
§100.100 「Misleading containers」 -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00/subpart-F/section-100.100
3) EU, EUR-Lex, Regulation (EU) No 1169/2011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 https://eur-lex.europa.eu/eli/reg/2011/1169/oj/eng
4) 일본,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식품표시법 및 식품표시기준」 -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
5)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25) 공고 - https://www.nhc.gov.cn/sps/c100088/202503/e8a432507f7d4f08a877e76a9b0578ce.shtml

5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하는 포장 전면 표시 대상 상품 및 중량·용량을 변경하면서 포장 크기와 용적을 유지하는 식품
포장·가격표 표시	중량·용량을 포장 전면에 표시하고, 글자 크기와 가격표 표시 면적의 최소기준을 적용
내용량 변경	식품 내용량을 변경하면서 포장 크기와 용적을 유지하는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
시행시점	법률 채택 후 공식 공포 시점부터 시행

- 본 개정안은 별도의 제품 인증제도가 아니라 상품의 중량·용량 표시와 슈링크플레이션을 규제하는 소비자보호 법률안임

○ 주요 요구사항

구분	주요 요구사항
적용대상	포장 전면 표시요건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하는 상품에 적용하며, 포장 유지형 내용량 변경 규정은 식품에 적용함
포장 전면 표시	상품의 중량·용량 정보를 포장 또는 라벨 전면에 상품명과 동등한 배치 및 기술적 형식으로 표시해야 함
글자 크기	중량·용량 표시 글자 크기는 상품명 표시 글자 크기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함
가격표 표시	가격표에 중량·용량 측정단위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면적은 상품 가격 표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가격표 형식	중량·용량 정보는 가격 표시와 동등한 배치·기술적 형식을 적용하고, 색상·글꼴 종류·글자 크기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함
내용량 변경	식품의 실제 중량·용량을 변경하면서 포장의 외형과 용적을 유지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함
위반 책임	해당 행위가 확인되면 제조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

ㅇ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평가항목	평가결과
적용 대상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하는 상품의 포장 표시와 가격표에 중량·용량 단위를 표시하는 상품에 적용되며, 포장 유지형 내용량 변경 규정은 식품에 적용됨
포장 표시	중량·용량 정보를 포장 또는 라벨 전면에 상품명과 동등한 배치·기술적 형식으로 표시하고, 글자 크기를 상품명 글자 크기의 5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함
가격표 표시	중량·용량 정보의 표시 면적을 가격 표시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가격 표시와 동일한 색상·글꼴 종류·글자 크기 등을 적용해야 함
내용량·포장 관리	식품의 중량·용량을 변경하면서 포장의 외형 크기와 용적을 유지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됨
기업 부담	대상 제품의 포장·라벨 변경에 따른 직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격표 표시 요건은 러시아 유통·판매단계에서 이행되므로 수출기업에는 현지 수입자·유통업체에 대한 중량·용량 정보 제공과 가격표 수정 협의 등의 간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위반 시 책임	소비자 기만행위가 확인되면 제조자가 현행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시행 대응	법률안 채택 시 공식 공포일부터 시행되므로 대상 품목과 최종 제정 여부를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경제성 분석(시나리오)

구분	관리대상 제품(SKU)	매출(USD)	초기 대응비용 Co (USD)	단위당 비용 (USD/SKU)	연간 환산비용 Cy (USD)
중소기업	1	500,000	5,000	5,000	1,667
중견기업	5	5,000,000	25,000	5,000	8,333
대기업	20	30,000,000	100,000	5,000	33,333

※ 매출액, 제품 수 및 비용은 기업 규모별 파급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용 가정이며, 실제 비용은 포장 형태, 변경 범위, 현지 유통업체의 가격표 관리 책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산출식: 초기 대응비용 Co = 관리대상 제품 수 x 제품당 USD 5,000

※ 제품당 비용은 러시아어 표시 검토, 포장·라벨 디자인 수정, 인쇄판 변경, 샘플 확인 및 가격표·유통정보 수정비용을 포함한 가정값임. 러시아 수출기업은 포장·라벨 변경에 따른 직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격표 표시요건은 현지 유통·판매단계에서 이행되므로 현지 수입자·유통업체에 중량·용량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표 수정 일정을 협의하는 등의 간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연간 환산비용 Cy = 초기 대응비용 Co ÷ 3년으로 산정함

※ 식품의 내용량 변경에 따라 용기 크기·금형·포장설비까지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품당 약 USD 10,000~50,0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적용 대상 여부와 시행시점을 우선 확인하고, 중량·용량 표시 위치·글자 크기 및 가격표 표시 기준을 점검하여 대상 제품 중심으로 포장·라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중견기업)** 다수 제품의 중량·용량, 포장 규격 및 가격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용량 변경 시 포장 크기와 용적을 함께 검토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 러시아 수출 제품군별 표시기준과 포장 변경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법률안 채택 여부와 정부의 적용 대상 상품 목록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현지 법인·수입자·유통업체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결론 및 권고 사항

- (결론) 본 개정안은 별도의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규제가 아니라, 상품의 중량·용량 표시를 강화하고 식품의 내용량 감소 시 기존 포장 크기와 용적을 유지하는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하는 소비자보호 규제임. 현재 국가두마에 제출된 개정 초안으로, 적용 대상 상품과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음

- (권고사항) 기업은 법률안의 채택 여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의 대상 상품 목록을 지속 확인하고, 포장 전면의 중량·용량 표시, 상품명 대비 글자 크기, 가격표 표시 면적·형식을 사전에 점검해야 함. 식품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포장 크기와 용적도 함께 검토하여 소비자 기만으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본 법률안은 상품의 중량·용량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슈링크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라는 정당한 규제목적을 가지며,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을 구분하거나 수입제품에만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별도의 시험·인증·적합성평가 절차를 신설하지 않으므로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이나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문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Codex CXS 1-1985는 순내용량 표시 및 오인 방지 원칙을 제공하지만 상품명 대비 글자크기 1/5, 가격면적 대비 1/3이라는 동일한 정량기준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성·비례성 검토가 필요함

○ 법률안은 사전에 공개되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대상 상품 목록과 집행기준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식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시행 유예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규제 투명성과 기업의 합리적인 준비기간 확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검토 필요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사항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사항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검토 필요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검토 필요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검토 필요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사항 없음

6 대응 방안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기업	적용 대상 및 표시기준 확인	- 법률안의 채택 여부와 정부가 정하는 적용 대상 상품 목록을 우선 확인해야 함 - 중량·용량 표시 위치와 글자 크기, 가격표 표시 면적 및 형식을 점검해야 함 - 수출 비중이 높은 제품부터 포장·라벨 수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견기업	제품·포장정보 체계화	- 제품별 중량·용량, 포장 규격 및 가격표 표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내용량 변경 시 포장의 외형과 용적을 함께 검토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함 - 현지 수입자·유통업체와 가격표 수정 및 재고 전환계획을 협의할 필요가 있음
대기업	글로벌 표시규제 통합관리	- 러시아 수출 제품군별 표시기준과 포장 변경 이력을 통합 관리해야 함 - 법률안 심의와 적용 대상 상품 목록 등 후속 규정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함 - 현지 법인·수입자·유통업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행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참고 1 참고자료

□ 참고자료

○ 러시아 국가두마 법률안 제1281187-8호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및 부속자료

- https://sozd.duma.gov.ru/bill/1281187-8

○ 러시아연방 법률 제2300-I호 「소비자권리보호법」 현행본

- https://pravo.gov.ru/proxy/ips/?docbody=&nd=102014512

○ 미국 21 CFR §101.7 「순내용량 표시」

-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01/subpart-A/section-101.7

○ §100.100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용기」

-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00/subpart-F/section-100.100

○ EU 「소비자 식품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EU) No 1169/2011」

- https://eur-lex.europa.eu/eli/reg/2011/1169/oj/eng

○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법 및 식품표시기준」

-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

○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25) 공고

- https://www.nhc.gov.cn/sps/c100088/202503/e8a432507f7d4f08a877e76a9b0578ce.shtml

참고 2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제8대 국가두마

국가두마 의원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ФС РФ
Дата 06.07.2026 13:48
№ 1281187-8; 1.1.

2026년 7월 6일 제54호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국가두마 의장
V. V. 볼로딘 귀하

존경하는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님!

러시아연방 헌법 제104조에 따라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을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국가두마에 제출합니다.

첨부:
1. 법률안 본문 2매
2. 법률안 설명자료 2매
3.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적 타당성 자료 1매
4. 법률안 채택에 따라 폐지, 효력 정지,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한 연방법률 목록 1매
5. 자기매체에 저장된 문서 사본

경의를 표하여,

N. V. 콜로메이체프

G. P. 캄네프

O. A. 미하일로프

Yu. V. 아포닌

V. P. 이사코프

A. V. 쿠린니

A. V. 프로코피예프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두마 의원들이 제출함
. . 아포닌, . . 콜로메이체프
. . 이사코프, . . 캄네프
. . 쿠린니, . . 미하일로프
. . 프로코피예프

법률안 제1281187-8호

연방법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1992년 2월 7일자 러시아연방 법률 제2300-I호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률」(「러시아연방 인민대표대회 및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공보」, 1992년 제15호, 제766조; 「러시아연방 법령집」, 1996년 제3호, 제140조; 1999년 제51호, 제6287조; 2004년 제52호, 제5275조; 2007년 제44호, 제5282조; 2009년 제48호, 제5711조; 2013년 제51호, 제6683조; 2024년 제53호, 제855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0조에 다음 내용의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한다.

"4.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하는 목록에 포함된 상품의 중량 또는 용량에 관한 정보는 상품 포장 또는 라벨의 전면에 상품명과 동등한 위치 및 표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의 중량 또는 용량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상품명에 사용된 글자 크기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5. 가격표에 상품의 중량 및 용량 측정단위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차지하는 면적은 상품 가격 표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가격 표시와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즉, 배치 및 기술적 표시 방식이 동등한 시각적 형태를 갖추고, 글자의 색상・종류・크기가 동일하여야 한다.

6. 식품의 중량 또는 용량(포장 제외)을 변경하면서 포장의 크기와 용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하며, 해당 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조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조

이 연방법은 공식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에 대하여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의 목적은 상품의 표시(가격표 및 포장)에 관한 추가 요건과 제품의 수량적 특성에 관한 구매자 정보제공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면서 포장 내 상품의 수량(중량 또는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소비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므로 법적 규제가 필요한다. 이는 서로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고, 상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사실상 조작하여 제품 가격을 은폐된 방식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안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1. 상품 포장의 전면에 중량 또는 용량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
2. 중량 또는 용량 정보를 상품명과 동등한 방식으로 표시
- 배치 및 기술적 표시 방식에서 동등한 시각적 형태를 갖출 것
- 글자의 색상・종류・크기 등 표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
- 중량 또는 용량 표시 글자 크기는 상품명 표시 글자 크기의 5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3. 상품 수량을 줄이면서 포장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소비자 기만에 해당함
4. 가격표에 표시되는 중량 및 용량 정보의 최소 표시기준을 설정
- 해당 정보의 표시 면적은 상품 가격 표시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상품 가격과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할 것

법률안의 채택은 소비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방지하며, 식품 제조업체 간 경쟁을 위한 보다 공정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의 채택 및 시행에는 연방예산으로 충당되는 추가 지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가의 재정적 의무에도 어떠한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법률안은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관한 조약」 및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기타 국제조약의 규정에 부합한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적 타당성 자료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에 대하여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의 채택 및 시행에는 연방예산으로 충당되는 추가 지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가의 재정적 의무에도 어떠한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연방법률 목록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의 채택과 관련하여 폐지, 효력 정지,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한 연방법률 목록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의 채택은 다른 연방법령의 폐지, 호력 정지,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